

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법원행정처에서 건축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총괄심의관이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주무위원으로서 건축기획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「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」 제19조의3 제7항에 따른 제척 규정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(법원행정처 공고 제2020-61호(2020. 2. 21.))에 대하여 추가 입법예고를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건축기획 심의의 실효성·공정성을 위하여 건축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총괄심의관이 건축기획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주무위원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함(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, 제4조 제목, 제4조 제1항 및 제4항)
- 법원은 건축기획업무를 직접수행하고 있으며, 공공건축지원센터

등에 건축기획을 의뢰함에 따라 건축기획업무를 수행한 경우 위원회 위원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제척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므로, 이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5조제3항)

4. 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 입법예고(안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 중 “위원장,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”을 “위원장과 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 중 “위원장, 부위원장, 주무위원”을 “위원장과 부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목 중 “및 주무위원”을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”를 “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(입법예고)	개정안(추가 입법예고)
<p>제3조(구성)</p> <p>① 위원회는 <u>위원장,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</u>을 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.</p> <p>② 특정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거나 설계의 세부사항에 관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<u>위원장, 부위원장, 주무위원</u>을 비롯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위원 등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해야 한다.</p> <p>제4조(위원장,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) ① <u>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기획총괄심의관이 된다.</u>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</u></p>	<p>제3조(구성)</p> <p>① -----<u>위원장과 부위원</u> <u>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u>위원장과 부위</u> <u>원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위원장, 부위원장)</p> <p>① ----- -----<u>부위원장은 기획조</u> <u>정실장이 된다.</u>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현행(입법예고)	개정안(추가 입법예고)
<p><u>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.</u></p> <p>제5조(위원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위원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u></p>	<p>제5조(위원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435